

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역중심제 대상금액 상향

□ 상위법령 개정
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(‘23.11.16.)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의 대상금액 상향

구분		당초	개정	비고
설계 용역	기본계획, 기본설계	15억원 이상	30억원 이상	15억원 ↑
	실시설계	25억원 이상	40억원 이상	
건설사업관리용역		20억원 이상	50억원 이상	30억원 ↑

□ 추정가격에 따른 발주방법

< 당초 >		설계	< 변경 >	
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	실시설계	금액 구분 (억원)	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	실시설계
PQ		2.2 ~ 5	PQ	
PQ + QBS		5 ~ 10	PQ + QBS	
PQ + SOQ		10 ~ 15	PQ + SOQ	
	PQ + SOQ	15 ~ 25	PQ + TP	PQ + SOQ
중심제		25 ~ 30		PQ + TP
		30 ~ 40	중심제	
		40억 이상		

< 당초 >		건설사업관리	< 변경 >	
시공단계 감리 (시공감리)	감독 권한대행 (책임감리)	금액 구분 (억원)	시공단계 감리 (시공감리)	감독 권한대행 (책임감리)
PQ		2.2 ~ 5	PQ	
PQ + PQ면접		5 ~ 20	PQ + PQ면접	
PQ + SOQ	중심제	20 ~ 50	PQ + SOQ	중심제
		50억 이상		

- * PQ (Pre-Qualification) : 사업수행능력평가(참여기술인, 유사용역 수행실적, 신용도 등 평가)
- * QBS (Qualification Based Selection) :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
- * SOQ (Statement of Qualification) : 참여기술인 경력, 역량, 수행계획 및 방법 평가
- * TP (Technical Proposal) : 기술제안서 평가(설계팀 경험 및 역량, 수행계획 및 방법, 기술향상에 포함할 사항 평가)